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18
----------	-------

발의연월일 : 2026. 4. 6.

발 의 자 : 황 희 · 한정애 · 허종식
김재원 · 김 윤 · 서영석
박희승 · 윤후덕 · 김선민
장종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단기복무 장교로 복무할 경우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상당 기간의 교육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2020년 6월 2일 입영자부터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의무장교로의 임용이 아닌 일반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부족한 의무장교 충원으로 인한 군의료체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으로써 우수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

조제1항제4호 단서, 제7조제7항 신설 등).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중 “육군3사관학교”를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은 2년으로 하고, 육군3사관학교”로, “학교”를 “하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의무장교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임용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의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임용

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5. ~ 7. (생략)
- ② ~ ⑥ (생략)
- <신설>

-.

- 5. ~ 7. (현행과 같음)
- ② ~ ⑥ (현행과 같음)
- ⑦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의무장교로 임용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